

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「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」를 정비하여,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(비상설화)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1)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원회 정비(위원회 비상설화)

나.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1) 위원회 구성(위원 50명 이내 → 10명 이내)

2) 위원회 위원장(군수 →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)

3) 위원회 해산(상시 → 안건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별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 법 예 고 : 2024. 8. 5. ~ 8. 26. 특시할 사항 없음

* 평창군 공고 제2024-1130호[농산물유통과-10036(2024.08.05.)호]

2) 사전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[기획예산과-1927(2024. 07. 31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예산과-1927(2024. 07. 31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가족복지과-4462(2024.08.01.)호]

5) 법 제 심 사 : 적정[기획예산과-4335(2024. 9. 12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설치한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먹거리 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먹거리 계획 시행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먹거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설치한다.</u></p>	<p>제10조(먹거리 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 수 있다.</u></p>
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<u>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 2명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. 다만,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<u>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<u>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</u> ----- -----.</p> <p><u>② 위원장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<u>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.</u>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<u><삭제></u>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제23조의3(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2.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·소비·유통·폐기 현황 및 분석
3.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
4.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
5.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6.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
7.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
8.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의 체계적 관리
2.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
3.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
4.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·지원
5.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~ ⑥ (생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
연락처	(033) 330 - 1371